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권익위원회에 공공기관의 채용비리 근절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증원한 인력 3명(4급 또는 5급 1명, 6급 1명, 7급 1명)의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2명(4급 또는 5급 1명, 6급 1명)은 상시정원으로 전환하고, 1명(7급 1명)은 감축하며,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정원 4명(5급 2명, 6급 1명, 7급 1명)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기관인 청렴연수원의 정원 1명(9급 1명)을 각각 감축하는 내용으로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4. 12. 3.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이행력 확보와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부패방지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2027년 12월 2일까지 존속하는 이해충돌방지팀을 신설하고, 권익개선정책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적극행정국민신청팀의 존속기한을 2025년 1월 31일에서 2027년 1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2024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4. 11. 15. ~ 11. 22.)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행동강령과 및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를 “행동강령과,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 및 이해충돌방지팀”로, “센터장”을 “센터장 및 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9호의4부터 제9호의10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이해충돌방지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각종 정책의 수립·총괄
2.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제도의 운영 및 연구개선
3.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교육 및 홍보
4.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해석, 질의회신 및 상담안내
5.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을 위한 각종 지침의 수립 및 시행
6.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기관별 관련 제도의 운영에 대한 지도·관리 및 지원
7. 기관별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 대한 지도·관리 및 지원

8.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의 처리에 관한 사항

9.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업무수행을 위한 실태조사 및 자료의 수집

· 관리 · 분석

10. 그 밖에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제15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별표 1 중 총계 “483”을 “481”로, 일반직 계 “475”를 “473”으로, 서기관 · 과학기술서기관 · 행정사무관 · 보건사무관 · 환경사무관 · 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39”를 “40”으로, 검찰사무관 · 행정사무관 · 사회복지사무관 · 통계사무관 · 부감사관 · 공업사무관 · 농업사무관 · 해양수산사무관 · 보건사무관 · 식품위생사무관 · 시설사무관 · 임업사무관 · 전산사무관 · 방송통신사무관 · 환경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155”를 “153”으로, 행정주사보 · 세무주사보 · 관세주사보 · 사회복지주사보 · 공업주사보 · 농업주사보 · 임업주사보 · 보건주사보 · 식품위생주사보 · 시설주사보 · 전산주사보 · 방송통신주사보 · 통계주사보 또는 환경주사보 “18”을 “17”로 한다.

별표 1의2 중 총계 “486”을 “484”로, 일반직 계 “478”을 “476”으로, 서기관 · 과학기술서기관 · 행정사무관 · 보건사무관 · 환경사무관 · 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39”를 “40”으로, 검찰사무관 · 행정사무관 · 사회복지사무관 · 통계사무관 · 부감사관 · 공업사무관 · 농업사무관 · 해양수산사무관 · 보건사무관 · 식품위생사무관 · 시설사무관 · 임업사무관 · 전산사무관 · 방송통신사무관 · 환경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155”를 “153”으

로, 행정주사보·세무주사보·관세주사보·사회복지주사보·공업주사보·농업주사보·임업주사보·보건주사보·식품위생주사보·시설주사보·전산주사보·방송통신주사보·통계주사보 또는 환경주사보 “18”을 “17”로 한다.

별표 1의3 및 별표 1의4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3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24”를 각각 “23”으로, 행정서기보·공업서기보·시설서기보·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2”를 “1”로 한다.

별표 3의2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25”를 각각 “24”로, 행정서기보·공업서기보·시설서기보·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2”를 “1”로 한다.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한다.

총리령 제1798호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2조제1항 중 “2025년 1월 31일”을 “2027년 1월 31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특례)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에 두는 공

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1 및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별표 1의3 및 별표 1의4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총액인건비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이해충돌방지팀은 2027년 12월 2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이해충돌방지팀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이해충돌방지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청렴정책총괄과장이 분장한다.

[별표 1의3]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정원표(제10조제1항 본문 관련)

(총리령 제0000호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 관련)

총계	479
정무직 계	4
위원장(장관급)	1
부위원장(차관급)	3
별정직 계	1
비서(6급 상당)	1
일반직 계	471
고위공무원단	9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	6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6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7
서기관	19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11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보건사무관·환경사무관·시설 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39
전산사무관	2
검찰사무관·행정사무관·사회복지사무관·통계사무관·부감사관·공 업사무관·농업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보건사무관·식품위생사 무관·시설사무관·임업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환 경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153

행정사무관 · 전산사무관 · 보호사무관 · 검찰사무관 · 마약수사사무관 또는 출입국관리사무관	20
행정사무관 · 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3
전산주사	1
운전주사	1
행정주사 · 감사주사 · 검찰주사 · 공업주사 · 관세주사 · 농업주사 · 마약수사주사 · 방송통신주사 · 보건주사 · 보호주사 · 사회복지주사 · 세무주사 · 시설주사 · 식품위생주사 · 임업주사 · 전산주사 · 출입국관리주사 · 통계주사 · 해양수산주사 또는 환경주사	136
행정주사 · 세무주사 · 검찰주사 · 시설주사 또는 전산주사	1
행정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2
행정주사보 · 세무주사보 · 관세주사보 · 사회복지주사보 · 공업주사보 · 농업주사보 · 임업주사보 · 보건주사보 · 식품위생주사보 · 시설주사보 · 전산주사보 · 방송통신주사보 · 통계주사보 또는 환경주사보	17
행정서기 · 공업서기 · 시설서기 또는 전산서기	15
행정서기보 · 공업서기보 · 시설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	8
운전서기보	3
기록연구사	1
사무운영서기보	2
전문경력관 가군(비상계획 담당)	1
전문경력관 가군(고충민원 심의지원 담당)	6
전문경력관 가군(제도개선 심의지원 담당)	1

전문경력관 다군(속기 담당)	1
경찰공무원 계	3
경정	1
경감	2

[별표 1의4]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정원표(제10조제1항 단서 관련)

(총리령 제0000호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 관련)

총계	482
정무직 계	4
위원장(장관급)	1
부위원장(차관급)	3
별정직 계	1
비서(6급 상당)	1
일반직 계	474
고위공무원단	9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	6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6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7
서기관	19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11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보건사무관·환경사무관·시설 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39
전산사무관	2
검찰사무관·행정사무관·사회복지사무관·통계사무관·부감사관·공 업사무관·농업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보건사무관·식품위생사 무관·시설사무관·임업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환 경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153

행정사무관 · 전산사무관 · 보호사무관 · 검찰사무관 · 마약수사사무관 또는 출입국관리사무관	20
행정사무관 · 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3
행정주사	3
전산주사	1
운전주사	1
행정주사 · 감사주사 · 검찰주사 · 공업주사 · 관세주사 · 농업주사 · 마약수사주사 · 방송통신주사 · 보건주사 · 보호주사 · 사회복지주사 · 세무주사 · 시설주사 · 식품위생주사 · 임업주사 · 전산주사 · 출입국관리주사 · 통계주사 · 해양수산주사 또는 환경주사	136
행정주사 · 세무주사 · 검찰주사 · 시설주사 또는 전산주사	1
행정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2
행정주사보 · 세무주사보 · 관세주사보 · 사회복지주사보 · 공업주사보 · 농업주사보 · 임업주사보 · 보건주사보 · 식품위생주사보 · 시설주사보 · 전산주사보 · 방송통신주사보 · 통계주사보 또는 환경주사보	17
행정서기 · 공업서기 · 시설서기 또는 전산서기	15
행정서기보 · 공업서기보 · 시설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	8
운전서기보	3
기록연구사	1
사무운영서기보	2
전문경력관 가군(비상계획 담당)	1
전문경력관 가군(고충민원 심의지원 담당)	6
전문경력관 가군(제도개선 심의지원 담당)	1

전문경력관 다군(속기 담당)	1
경찰공무원 계	3
경정	1
경감	2

[별표 6]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한시정원표(제15조 관련)

제15조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5년 12월 31일)

총계	2
일반직 계	2
행정사무관·검찰사무관·사회복지사무관·통계사무관·부감사 관·공업사무관·농업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보건사무관 ·식품위생사무관·시설사무관·임업사무관·전산사무관· 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환경사무관	1
행정주사·감사주사·검찰주사·공업주사·관세주사·농업주사 ·마약수사주사·방송통신주사·보건주사·보호주사·사회 복지주사·세무주사·시설주사·식품위생주사·임업주사· 전산주사·출입국관리주사·통계주사·해양수산주사 또는 환 경주사	1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부패방지국) ① (생 략)	제6조(부패방지국) ① (현행과 같 음)
② 부패방지국에 청렴정책총괄 과, 청렴조사평가과, 부패영향 분석과, 청탁금지제도과, <u>행동</u> <u>강령과 및 채용비리통합신고센</u> <u>터를</u> 두고, 각 과장은 부이사관 ·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 으로, <u>센터장</u> 은 과학기술서기관 ·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 ----- ----- <u>행동</u> <u>강령과,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u> <u>및 이해충돌방지팀을</u> ----- ----- --- <u>센터장 및 팀장</u> ----- ----- -----.
③ 청렴정책총괄과장은 다음 사 항을 분장한다.	③ ----- -----.
1. ~ 9의3. (생 략)	1. ~ 9의3. (현행과 같음)
9의4. <u>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u> <u>에 관한 각종 정책의 수립·</u> <u>총괄 및 조정</u>	<삭 제>
9의5. <u>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u> <u>에 관한 기관별 관련 제도의</u> <u>운영에 대한 지도·관리 및</u> <u>지원</u>	<삭 제>
9의6. <u>기관별 이해충돌방지담당</u> <u>관에 대한 지도·관리 및 지</u> <u>원</u>	<삭 제>

9의7.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삭 제>

9의8.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에 관한 업무수행을 위한 실
태조사 및 자료의 수집·관리
· 분석

<삭 제>

9의9.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
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해석 및 질의회신

<삭 제>

9의10.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
지법」 위반행위 신고의 처리
에 관한 사항

<삭 제>

10. (생 략)

10. (현행과 같음)

④ ~ ⑧ (생 략)

④ ~ ⑧ (현행과 같음)

<신 설>

⑨ 이해충돌방지팀장은 다음 사
항을 분장한다.

1.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각종 정책의 수립·총괄

2.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제도의 운영 및 연구개
선

3.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교육 및 홍보

4.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해
석, 질의회신 및 상담안내

제15조(한시정원) ① 공공기관의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관련 제도의 운영, 신고의 처리 및 실태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까지 별표 6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민권익위원회에 둔다.

5.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을 위한 각종 지침의 수립 및 시행
6.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기관별 관련 제도의 운영에 대한 지도·관리 및 지원
7. 기관별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 대한 지도·관리 및 지원
8.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의 처리에 관한 사항
9.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업무수행을 위한 실태조사 및 자료의 수집·관리·분석
10. 그 밖에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제15조(한시정원) <삭 제>

② (생 략) 총리령 제1798호 국민권익위원회 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 칙 제2조(총액인건비로 신설한 기구 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 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 설되는 적극행정국민신청팀은 <u>2025년 1월 31일까지</u> 존속한다. ② (생 략)	(현행 제2항과 같음) 총리령 제1798호 국민권익위원회 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 칙 제2조(총액인건비로 신설한 기구 의 존속기한) ① ----- ----- ----- ----- <u>2027년 1월 31일</u>-----. ② (현행과 같음)
--	---

■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정원표(제10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483	481	-2
일반직 계	475	473	-2
서기관 · 과학기술서기관 · 행정 사무관 · 보건사무관 · 환경사무 관 · 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39	40	+1
검찰사무관 · 행정사무관 · 사회 복지사무관 · 통계사무관 · 부감 사관 · 공업사무관 · 농업사무관 · 해양수산사무관 · 보건사무관 · 식품위생사무관 · 시설사무관 · 임업사무관 · 전산사무관 · 방 송통신사무관 · 환경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155	153	-2

· · 행정주사보 · 세무주사보 · 관세 주사보 · 사회복지주사보 · 공업 주사보 · 농업주사보 · 임업주사 보 · 보건주사보 · 식품위생주사 보 · 시설주사보 · 전산주사보 · 방송통신주사보 · 통계주사보 또는 환경주사보 · ·	· · <u>18</u> · ·	· · <u>17</u> · ·	-1
---	--	--	-----------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정원표(제10조제1항 단서 관련)

[illegible]

• • 행정주사보 · 세무주사보 · 관세 주사보 · 사회복지주사보 · 공업 주사보 · 농업주사보 · 임업주사 보 · 보건주사보 · 식품위생주사 보 · 시설주사보 · 전산주사보 · 방송통신주사보 · 통계주사보 또는 환경주사보 • •	• • <u>18</u> • •	• • <u>17</u> • •	-1
---	--	--	-----------

■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3]

청렴연수원 공무원 정원표(제11조제2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 <u>24</u>	• <u>23</u>	-1
일반직 계	<u>24</u>	<u>23</u>	-1
•	•	•	
•	•	•	
행정서기보·공업서기보·시설 서기보·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u>2</u>	<u>1</u>	-1
•	•	•	
•	•	•	

■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3의2]

청렴연수원 공무원 정원표(제11조제2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 <u>25</u>	• <u>24</u>	-1
일반직 계	<u>25</u>	<u>24</u>	-1
•	•	•	
•	•	•	
행정서기보·공업서기보·시설 서기보·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u>2</u>	<u>1</u>	-1
•	•	•	
•	•	•	